

인터넷 공간, 표현의 자유와 규제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 기록성, 복제성, 연결성 그리고 전파성의 특성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표현은 고립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출판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 표현이 된다. 이는 인터넷에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높게 부과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질서 위주의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초래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두고 벌어진 촛불시위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 매개 정치 사회로 구조변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촛불시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중매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중매체 간의 프레임 갈등, 무기력에 가까운 의회 및 정당의 기능, 탈조직화된 시민의견 표명과 행동에 끌려가야 했던 시민단체의 모습 등은 과거 집회나 시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다.

이러한 중간자 집단, 즉 정치매개집단(political intermediary)의 영향력 약화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많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주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 예

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줄어든 집단의 힘을 보여주었다.

개인에 대한 미디어적 책무 증가

정치 매개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거시적 사회규범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이 부상했다. 보다 자율성을 가진 개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슈 공중(issue public)을 형성했다. 이 개인들은 과거의 공중과 전혀 다른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 채널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과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이슈에 대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

는 검색 시스템 등은 개인에게 부여된 새로운 조건이다. 이는 고립된 대중사회의 개인이 아닌 참여적 조건을 갖춘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개인의 부상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성의 발로는 이 매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성의 부각은 표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은 일반 윤리를 넘어서 미디어 윤리를 동시에 요구받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 기록성, 복제성, 연결성 그리고 전파성의 특성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표현은 고립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출판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 표현이 된다. 이는 인터넷에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높게 부과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현재 인터넷을 규제하는 법은 매우 다양하게 발달했다. 한국은 국가의 안전 확보와 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통제주의 모델(Statist Model)에 가깝다. 통제주의 모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기보다는 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제약 조건을 입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법 조항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다. 이 법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이하 임시조치 조항)와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이하 게시판 본인 확인제 조항)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논쟁점에 있다. 정치 관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이하 공선법)에서도 선거기간 동안 게시판 실명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 법 조항들은 입법 목적으로 보면, 타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적 성격을 갖는다. 임시조치 조항의 경우 타인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부터 개인의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 조치한 ISP에 대한 면책 장치의 성격이 강하다. 게시판 본인 확인제 역시 개인에게 가명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개인인증을 받게 해서 개인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회 책임론에 기반해 있다.

인터넷 행위규제, 기본권 침해 우려

사실, 모든 입법 조항은 그 자체로 본다면 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외부 효과,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기 협상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된 이번 촛불집회의 경우, 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신문들에 대한 미디어 비판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이 신문들의 광고주를 압박하는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포함했다. 얽혀 있는 갈등관계 구조로 이 사안들을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간략한 의견 제시는 가능할 것이다. 먼저 특정 신문에 대한 반대의사는 그 대상 이비록 사적 기업이기는 하나 매체들이 공공의 이슈를 다루고 보도하는 언론사이고, 그 내용이 공익과 관련된 갈등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다. 언론사에 대한 시민의 비판은 그 표현 수준이 위법적(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이지 않다면 정당과 같은 정치기구에 준하는 비판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쟁점은 이 신문들에 대한 광고주 압박운동

의 합법성 문제이다. 이 사안은 제3자인 광고주의 광고 집행 행위가 신문사의 정치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가를 놓고 볼 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그로 인해 이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행위에 대한 세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반대운동을 한 시민들의 행동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넓은 표현 행위 및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시정요구 현행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노출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은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참여 또는 시위 행위가 표현 행위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이러한 정치적 행동과 표현물의 위법성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광고주 불매 운동과 관련해, 다음(Daum)이 망법상의 임시조치 조항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판단 여부를 심의의뢰하면서 이 이슈는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80건의 게시글 가운데 58건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로 판정하고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했다.

이 판정은 현행 인터넷 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상

당 부분 노출했다. 그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별 표현물에 대한 위법성 및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위임적 심의기구로서 표현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민간 행정청에 위임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은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서 안 된다. 재판 절차와 같은 사법적 적법절차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의 위법성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판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표현 행위가 아닌 광고주 불매운동 그 자체에 대한 위법성 판정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그에 준하게 이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ISP에 의해 삭제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ISP가 개별 이용자의 표현물을 모니터링하는 가이드가 된다. 그렇기에 표현물을 일반화해서 유형화하기보다는 표현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적시와 문제점, 판단 기준을 상세하게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의록이나 심의 가이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인터넷 정치 환경에서 대부분의 정치행위와 갈등이 온라인 표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정치갈등의 재판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자칫하면 위법적 표현 행위에 대한 과잉 일반화를 초래하고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

또 다른 이해관계 갈등의 하나는 일부 신문사들이 자사 및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규범적 위협이라 하겠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면, 인터넷상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의 개별 표현물에 대해 임시조치 요구를 ISP에 하거나 추후 민·형사적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공간’을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고이다.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문사가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개인들의 표현 공간에 대해 폐쇄 요구를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언론사 폐쇄 조치와 그 발상이 다르지 않다.

이 밖에도 임시조치는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경우 자신의 블로그로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자 한국양회 협회가 임시조치를 활용해 삭제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이 났고 최 목사는 교보문화대상의 환경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다. 익명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익명과 실명의 결정권한도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는 소수 의견자가 다수와 함께 익명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받는 집회와 비교해서도 불평등하다.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과 블로그는 공적 광장(public forum)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원자화된 대중을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우리는 정치 환경에서 인터넷이 가져온 긍정적 신호가 더 많다는 점을 잊

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은 마을 공원과 같아서 그 공간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규범이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상호규범이 중요 통제수단 기본권 취지 훼손하지 말아야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2002년 6월 27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헌결정 및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결정”). 현재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표현 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로 규정했다는 점과 규제를 하더라도 헌법적 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